

# [ 변경 대비표 ]

1. 펀드명 : 우리프랭클린미국인컴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
2. 효력발생일 : 2022.12.28

3. 정정사유

- 이익분배 조항 변경(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-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

## 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오기 정정	제23조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, 6.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	제23조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, 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이익분배 조항 변경 (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	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<추가>한다.  <신설>	제33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
## 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	[요약정보]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[요약정보]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<b>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</b>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	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	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<b>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</b>
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	제 2 부. 9. 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	제 2 부. 9. 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목표 헤지비율</td> <td>환헤지 비용(연간, 원)</td> </tr> <tr> <td>100%</td> <td><b>3,921,608</b></td> </tr> </table>	목표 헤지비율	환헤지 비용(연간, 원)	100%	<b>3,921,608</b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목표 헤지비율</td> <td>환헤지 비용(연간, 원)</td> </tr> <tr> <td>100%</td> <td><b>3,216,840</b></td> </tr> </table>	목표 헤지비율	환헤지 비용(연간, 원)	100%
목표 헤지비율	환헤지 비용(연간, 원)								
100%	<b>3,921,608</b>								
목표 헤지비율	환헤지 비용(연간, 원)								
100%	<b>3,216,840</b>								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	제 2 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 년 수익률 변동성은 <b>11.25%</b> 입니다.	제 2 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 년 수익률 변동성은 <b>12.39%</b> 입니다.							
이익분배 조항 변경 (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	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(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>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b>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 <신설>	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(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b>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<b>1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b> <b>2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b>							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<b>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</b>